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37호(號) 1927(昭和 2)년 10월 12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27호(號)

남만주철도주식회사소관철도(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)  
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화물연락운송규칙(貨物連絡運送規則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  
조선내사설철도(朝鮮內私設鐵道)

1927(昭和 2)년 10월 12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남만주철도주식회사소관철도(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)  
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화물연락운송규칙(貨物連絡運送規則)  
조선내사설철도(朝鮮內私設鐵道)

제1조(條)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경유(經由)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(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: 이하[以下] 간단히 남만주철도[南滿洲鐵道]라 칭[稱]함), 조선(朝鮮) 내(內) 사설철도(私設鐵道) 간(間) 화물(貨物)의 연락운송(聯絡運送)을 하는 경우에는 본(本) 규칙(規則)에 의(依)함.

제2조(條) 연락운송(聯絡運送)의 취급(取扱)을 하는 역소(驛所)는 아래[左]와 같이 함. 단(但) 취급상(取扱上) 특수(特殊)한 제한(制限)을 부가(附加)한 역소(驛所)에서는 그 제한(制限)에 의(依)함.

남만주철도(南滿洲鐵道)

각(各) 역(驛: 단동역[安東驛]을 제[除]함)

조선(朝鮮) 내(內) 사설철도(私設鐵道)

조선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(朝鮮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: 이하[以下] 간단히 조선철도[朝鮮鐵道]라 칭[稱]함)

각(各) 역(驛: 조치원[鳥致院]), 김천[金泉], 대구[大邱], 마산[馬山], 사리원[沙里院], 송정리[松汀里] 및 함흥[咸興]의 각(各) 역(驛) 및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

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(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: 이하[以下] 간단히 경남철도[京南鐵道]라 칭[稱]함)

각(各) 역(驛: 천안역[天安驛] 및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

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(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: 이하[以下] 간단히 금강산철도[金剛山鐵道]라 칭[稱]함)

각(各) 역(驛: 철원역[鐵原驛] 및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

개천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(价川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: 이하[以下] 간단히 개천철도[价川鐵道]라 칭[稱]함)

각(各) 역(驛: 신안주역[新安州驛] 및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

제3조(條) 아래[左]에 게시(揭示)한 화물(貨物)은 철도(鐵道)에서 특히 승낙(承諾)한 경우에  
만 그 운송(運送)을 인수(引受)함.

1 남만주철도(南滿洲鐵道)와 조선철도(朝鮮鐵道) 광궤선(廣軌線), 경남철도(京南鐵道) 또  
는 금강산철도(金剛山鐵道) 간(間)

가 소화물급화물(小貨物扱貨物)로서 1개(箇)의 길이[長] 18척(尺), 중량(重量) 3톤(噸·  
ton) 혹은 용적(容積) 3백 입방척(立方尺)을 초과(超過)한 것 또는 차급화물(車扱貨物)  
로서 1개(箇)의 길이[長] 33척(尺), 중량(重量) 20톤(噸·ton) 혹은 용적(容積) 천팔백  
입방척(立方尺)을 초과(超過)한 것

나 급외품(扱外品) 제1종(種) 화약류(火藥類) 중(中) 병(丙)에 속(屬)한 것

다 급외품(級外品) 제4종(種) 철도차량(鐵道車輛)

라 급외품(級外品) 제5종(種) 사체(死體)

마 급외품(級外品) 제6종(種) 특종고가품(特種高價品)

바 급외품(級外品) 제7종(種) 오예(汚穢)한 물품

사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제25조(條)제2항(項)의 적재  
제한(積載制限)을 초과(超過)한 것

아 열차(列車)를 지정(指定)하여 운송(運送)한 화물(貨物)

자 임시열차(臨時列車)로 운송(運送)한 화물(貨物)

2 남만주철도(南滿洲鐵道)와 조선철도(朝鮮鐵道) 협궤선(挾軌線) 또는 개천철도(价川鐵  
道) 간(間)

1 남만주철도(南滿洲鐵道)와 조선철도(朝鮮鐵道) 광궤선(廣軌線), 경남철도(京南鐵道) 또  
는 금강산철도(金剛山鐵道) 간(間)

가 1개(箇)의 중량(重量) 1톤(噸·ton), 용적(容積) 3백 입방척(立方尺), 길이[長]은 소화  
물급화물(小貨物扱貨物)에 있어서는 14척(尺), 차급화물(車扱貨物)에 있어서는 30척  
(尺)을 초과(超過)한 것

나 급외품(扱外品) 제1종(種) 화약류(火藥類)

다 급외품(級外品) 제4종(種) 철도차량(鐵道車輛)

라 급외품(級外品) 제5종(種) 사체(死體)

마 급외품(級外品) 제6종(種) 특종고가품(特種高價品)

바 급외품(級外品) 제7종(種) 오예(汚穢)한 물품

사 열차(列車)를 지정(指定)하여 운송(運送)한 화물(貨物)

아 임시열차(臨時列車)로 운송(運送)한 화물(貨物)

제4조(條) 화물(貨物)의 접속역(接續驛)은 아래[左]와 같이 함.

남만주철도(南滿洲鐵道),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간(間)

단동역(安東驛)

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, 조선철도(朝鮮鐵道) 간(間)         | 충북선(忠北線)         | 조치원역(鳥致院驛) |
|   | 경북선(慶北線)         | 김천역(金泉驛)   |
|   | 경남선(慶南線)         | 마산역(馬山驛)   |
|   | 전남선(全南線)         | 송정리역(松丁里驛) |
|   | 경동선(慶東線: 협궤[挾軌]) | 대구역(大邱驛)   |
|   | 황해선(黃海線: 협궤[挾軌]) | 사리원역(沙里院驛) |
|   | 함남선(咸南線: 협궤[挾軌]) | 함흥역(咸興驛)   |
|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, 경남철도(京南鐵道) 간(間)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천안역(天安驛)   |
|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, 금강산철도(金剛山鐵道) 간(間)       |                  | 철원역(鐵原驛)   |
|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, 개천철도(价川鐵道: 협궤[挾軌]) 간(間) |                  | 신안주역(新安州驛) |

제5조(條) 화물(貨物)의 급종별(扱種別)은 각(各) 철도(鐵道)가 정(定)한 것에 의하여 어떤 급(扱)에도 연락(連絡)의 취급(取扱)을 함.

제6조(條) 조선철도(朝鮮鐵道) 협궤선(挾軌線) 및 개천철도(价川鐵道) 차급(車扱)으로 연락(連絡)하는 화물(貨物)의 1구(口)는 아래[左]에 게시(揭示)한 톤수(噸數) 또는 동(同) 톤수(噸數)에 대한 운임을 지불(支拂)한 것에 한(限)함.

조선철도(朝鮮鐵道) 협궤선(挾軌線)

5톤(噸·ton), 8톤(噸·ton), 9톤(噸·ton), 10톤(噸·ton), 13톤(噸·ton)부터 30톤(噸·ton)까지

개천철도(价川鐵道)

5톤(噸·ton), 10톤(噸·ton), 15톤(噸·ton), 20톤(噸·ton), 25톤(噸·ton), 30톤(噸·ton)

제7조(條) 화물운송장(貨物運送狀), 화물운송통지서(貨物運送通知書) 및 화물상환증(貨物相換證)의 양식(樣式)은 각(各) 철도(鐵道)가 정(定)한 것에 의(依)함.

제8조(條) 운임(運賃), 할증운임[增運賃], 할증임금[增賃金] 및 요금(料金)은 아래[左]에 게시(揭示)한 사항(事項)을 제(除)하고 각(各) 철도(鐵道)가 정(定)한 것에 의하여 각각 별도(別途)로 이것을 산출(算出)하고 병산(併算)함.

- 1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제7조(條)는 남만주철도(南滿洲鐵道) 및 조선(朝鮮) 내(內) 사설철도(私設鐵道)에서의 운임(運賃)을 계산(計算)한 경우에 이것을 준용(準用)하지 아니함.
- 2 남만주철도(南滿洲鐵道) 1차급(車扱)에 대하여는 동(同) 철도운임(鐵道運賃)으로부터 운임계산톤수(運賃計算噸數)에 대하여 1미국톤(米噸·ton)당(當) 25전(錢)의 비율(比率)로 계산한 금액(金額)을 저감(低減)함.
- 3 급외품(扱外品) 제1종(種) 화약류(火藥類) 또는 급외품(級外品) 제2종(種) 위험품(危險品)을 다른 품명(品名)에 의하여 탁송(託送)한 경우에 부가(附加)하여야 할 할증운임[增

運賃]은 각 철도 각각 별도(別途)로 이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모두 조선국유철도 화물 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제88조(條)의 규정(規定)에 의(依)함.

4 고가품(高價品) 및 수류(獸類)의 할증임금[增賃金]은 각 철도(남만주철도[南滿洲鐵道])를 제[除]함의 영업 마일 수(哩程·mileage)를 통산(通算)하여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제63조(條)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(依)함.

운임(運賃) 및 요금(料金)의 계산상(計算上) 조선국유철도소속 표기하중(朝鮮國有鐵道所屬標記荷重) 26(噸·ton)의 화차(貨車)는 남만주철도(南滿洲鐵道)에서는 동(同) 철도소속 표기하중(鐵道所屬標記荷重) 33미국톤(米噸)의 화차(貨車)로, 조선철도(朝鮮鐵道: 광궤선[廣軌線]에 한[限]함), 경남철도(京南鐵道) 및 금강산철도(金剛山鐵道)에서는 동(同) 철도소속하중(鐵道所屬荷重) 26톤(噸·ton)의 화차(貨車)로, 또 남만주철도소속 표기하중(南滿洲鐵道所屬標記荷重) 33미국톤(米噸)의 화차(貨車)는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에서는 동(同) 철도소속 표준하중(鐵道所屬標準荷重)로, 조선철도(광궤선[廣軌線]에 한[限]함), 경남철도(京南鐵道) 및 금강산철도에서는 동(同) 철도소속 하중(鐵道所屬荷重) 26톤(噸·ton)의 화차(貨車)로 간주(看做)함.

제9조(條) 차급화물(車扱貨物)의 운송에는 조선국유철도소속 표기하중(朝鮮國有鐵道所屬標記荷重) 26톤(噸·ton)의 화차(貨車) 또는 남만주철도소속 표기하중(南滿洲鐵道所屬標記荷重) 33미국톤(米噸)의 화차(貨車)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, 어떤 화차(貨車)에도 1차(車)당(當) 30영국톤(英噸: 5만803근[斤]2)까지 적재(積載)함을 득(得)함.

제10조(條) 연락운송(連絡運送)에 관계된 화물에 관한 손해(損害)로서 철도의 책임으로 귀속(歸屬)함이 가(可)한 것에 대하여는 각 철도는 연대(連帶)하여 배상(賠償)의 책임(責任)을 지지 아니함.

제11조(條)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제12조(條), 제15조(條)부터 제17조(條)까지, 제20조(條), 제24조(條) 제1호(號), 제2호(號) 및 제4호(號)부터 제6호(號)까지, 25조(條)제2항(項), 제36조(條), 제40조(條), 제41조(條), 제46조(條), 제76조(條)부터 제79조(條)까지 및 제85조(條)의 규정(規定)은 연락운송(聯絡運送)의 경우에 이것을 준용(準用)함. 단(但) 남만주철도(南滿洲鐵道)에서 청구(請求)를 받은 화물의 발역(發驛)으로의 송환(送還), 수하인(受荷人), 착역(著驛)의 변경(變更), 착역(著驛)에 있어서 인도(引渡)의 중지(中止) 혹은 그 해제(解除)에 대하여는 동(同) 규칙(規則) 제79조(條)의 지도수수료(指圖手數料)를 적용(適用)하지 아니함.

제12조(條) 각(各) 철도에 있어서 운송에 관한 제규정(諸規定)은 본(本) 규칙(規則)에 저촉(抵觸)하지 않는 한(限) 연락운송(聯絡運送)에 대하여 각기(各其)의 소관(所管) 내(內)의 운송(運送)에 대한 효력(效力)을 가짐.

부 칙(附則)

본(本) 규칙(規則)은 1927(昭和 2)년 10월 12일부터 이것을 시행(施行)함.